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를 첨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급대상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2. 발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그 발급대상자의 4촌 이내 혈족

제8조제2항제2호 본문 중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사망사실 등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

별표 2 제1호의 장애상태란 중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을 “중수지관절”로 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루·요루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폐색이 있는 사람
		방광루를 가진 사람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별표 3 제11호 1) 중 “난치성 복수”를 “난치성 복수/흉수”로, 2) 중 “간성뇌증 2회 이상”을 “간성뇌증”으로, 5) 중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으로 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장폐색, 배뇨기능장애 또는 장루·요루 관련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2.5cm×3cm)”를 “(3.5cm×4.5cm)”로 하고, 제2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를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며, 제2호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발급대상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 발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가 모

두 없는 경우로서 그 발급대상자의 4촌 이내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3.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현역병 지원자(모집병)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현역복무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군사특기별 신체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특기로 입영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 유의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역병 지원자(모집병)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현역복무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군사특기별 신체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특기로 입영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앞쪽 중 “ [] 대기업 [] 중소기업”을 “ [] 대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가) 및 별지 제10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 (병무민원상담)
○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평시 훈련용]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입영구분
통지번호 _____	☐ 개별입영 ☐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예비군부대)		
입영일시(훈련기간)		
훈련장소		
차량탑승 장소/시간		
「병역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 따라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개별입영 대상은 입영일시까지 훈련장으로 입영해야 하며,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시간까지 탑승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입영시간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이 없는 경우 입영할 수 없으며 무단불참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영하실 때 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 훈련 복장은 군 전역 시 지급받은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등을 착용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미착용하거나 미지참한 경우는 훈련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 귀가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형 변화로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맞지 않더라도 착용 또는 지참하고 입영하시면 동원훈련소집부대(훈련장)에서 체형에 맞는 것으로 대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 뒷면 참조)
-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해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 등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병역법」 제93조의2에 따라 해당 고용주나 학교의 장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병무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입영 안내 및 유의 사항	
훈련장소 교통편	1. 훈련장소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교통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소집부대장이 입영안내 서신으로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보안상 누리집에 공개가 곤란한 일부 부대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소집 통지서	1.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훈련소집통지서를 모바일앱 ·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영방법 변경신청	1.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 받았지만 출장 등 부득이 하게 개별입영을 해야만 하는 사람,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받았지만 수송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차량수송 부대에 한함)은 입영방법 변경 신청을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 신청/입영방법 조회」'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사전에 변경신청 없이 개별 입영한 경우에는 통지된 대로 차량탑승에 준하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입영여비 지급	1.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비와 함께 지급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요금만 지급됩니다. 3.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 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일자 연기신청	1. 질병치료, 취업 · 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면허 · 자격시험(운전면허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 활용능력 · 생업이나 취업과 관련이 적은 교양분야 및 그 밖의 연중 상시 접수 또는 상시 검정 면허 ·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연기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우편, FAX, 방문 접수 ※ 연기사유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업무수행, 자격 · 면허시험응시, 출국예정, 주요경기참가, 직업훈련기관재학 사유로 인한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동안 통틀어 2회로 연기 횟수가 제한됩니다. 2. 소집부대장의 「입영안내 서신」을 받고 소집부대에 불참의사를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훈련소집 기간 중에 해외체류 사유로 출국 예정인 사람은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은 재입영훈련을 받거나 다른 예비군훈련을 받게 됩니다. ☞ (지방병무청 연락처)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 → 지방병무청 동원훈련담당자 전화번호' 참조
전투복/ 전투화 대여제도	1.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합니다.(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이름표,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 2.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투복 · 전투화 대여제도는 체형변화로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맞지 않더라도 착용 또는 지참하고 입영하면 소집부대(훈련장)에서 체형에 맞는 것으로 대여해 주는 제도로 부대 여건에 따라 운영됩니다.
기 타	1. 통지서를 받은 이후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입영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와 다른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함께 받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우선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학생 입영·소집(취소), 입영·소집시기 변경: 1일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2일

구 분	[]우선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학생 입영·소집(취소)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재학생 입영·소집시기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승선군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기타 ()		
[] 우선 병역판정 검사 신청	[]국외출국(예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타() 병역판정검사 희망일: 년 월 일		
[] 입영판정검사 신청(취소)	[]입영판정검사 신청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년 월 일 []입영판정검사 신청 취소	
[]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 신청	[](재)병역판정검사 신청	(재)병역판정검사 희망일: 년 월 일 []입영·소집 신청 년 분기 [] 월 [] 언제라도 좋다	
[]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취소), 입영·소집 시기 변경 신청	학적사항 ※ 입영·소집 신청자 공통	학교	학과 학년(재학·휴학·퇴학·졸업)
	[]입영·소집 신청	년	[] 분기 [] 월 [] 언제라도 좋다
	[]입영·소집 신청 취소	[대학(교) 년	재학, 복학] 학업계속
	[]입영·소집시기 변경 신청	년 분기 월(을)	년 분기 월(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8조의3제4항, 제126조제1항, 제128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의2, 제85조, 제8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우선 병역판정 검사	국외취업자	국외여행 허가사항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 증명서	없음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없음
	기타	관계 증명서류	없음
입영판정검사를 원하는 사람		없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 신청을 원하는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
- 입영·소집 신청자 유의사항
 -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취소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영·소집시기 변경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이미 입영·소집이 통지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시기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 ----- ----- 신청서를 ----- ----- ----- ----- ----- -----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를 첨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1. 발급대상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 설>	2. 발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그 발급대상자의 4촌 이내 혈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	② ----- ----- -----

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
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
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
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

-----.

-----.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사망사실 등 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u>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u>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